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5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조응천·송기헌·한준호

이탄희ㆍ허 영ㆍ김진표

문진석 · 김주영 · 이용우

최인호 · 소병철 · 이상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별방문 등의 금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호별방문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이러한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50조제2항).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u>정관</u>	②
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	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